

漢城府民會에 관한 一考察

尹 炳 喜

- I. 머리말
- II. 漢城府民會의 설립
- III. 漢城府民會의 설립동기
- IV. 漢城府民會의 조직 및 활동
- V. 맺음말

I. 머리말

漢城府民會는 舊韓末 비교적 짧은 기간동안 존속되었지만 우리나라 서울에서 처음으로 조직된 自治機關이었다. 그리고 여기에는 兪吉濬이 깊이 관련되어 있었다. 즉 兪吉濬이 11년간의 日本亡命 생활에서 귀국한 1907년 8월 이후 일체의 관직을 사양하고 在野人으로 머물면서 漢城府民會會長職을 맡았었다.¹⁾ 그 직책은 그가 日本에서 돌아온 뒤 맡았던 대표적인 것이라 하겠다.

그런데 漢城府民會에 대해서는 規約, 卹立理由書, 卹立趣旨書 등이 남아있고 또 당시의 신문지상에도 관계 기사를 찾을 수 있다.²⁾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漢城府民會에 대해서는 거의 研究가 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약간 소개된 것 가운데에도 사실과 다른 점들이 보이고 있다.³⁾

-
- 1) 「辭職納品疏」, 『兪吉濬全書』(以下『全書』Ⅳ pp.73~77.
 - 2) 『同上書』 pp.286~315. 관계기사는 주로 『皇城新聞』과 『大韓每日申報』에서 찾을 수 있다.
 - 3) 金永上, 「漢城府民會에 對한 考察」, 『鄉土서울』 31, 1967 이라는 간단한 논문이 있을 뿐이다. 그런데 이 논문에는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실들이 있다. 그것은 대체로 『京城府史』의 기록에 의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京城府史』의 내용에도 간혹 誤謬가 들어 있다.

본고에서는 兪吉濬과 관련하여 漢城府民會에 대하여 몇가지 문제를 살펴 볼까한다. 즉 漢城府民會가 어떻게 설립되었고, 그 설립동기는 무엇이었으며, 어떠한 조직을 가지고 무슨 활동을 하였는가에 관해서 고찰하여 보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이 漢城府民會의 실체를 밝힘과 동시에 兪吉濬의 활동을 이해하는데 다소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다행으로 생각하겠다.

Ⅱ. 漢城府民會의 설립

漢城府民會가 조직된 것은 1907년 10월이었다. 이는 1907년 10월 17일 日本皇太子의 訪韓이 있게되자 그 환영준비를 위한 奉迎會를 계기로 설립되었다. 初代會長에는 당시 漢城府尹이었던 張憲植이 就任하였다.⁴⁾

- 4) 漢城府民會가 처음 조직된 것은 언제이며 會長은 누구였는가 등에 관해서는 기록마다 약간의 차이가 보인다. 가장 정확하다고 볼 수 있는 그 당시의 기사인 『皇城新聞』 1907년 10월 15일자 잡보 「奉迎會任員」의 기사는 다음과 같다.

今回 日本皇太子殿下를 奉迎하기 爲하야 漢城府民會團體를 組織하고 任員을 選定하였는데 會長 張憲植氏 副會長 洪肯燮氏 設備委員長 金宇鉉氏 掌儀委員長 趙秉澤氏 獻品委員長 尹晶錫氏 廣務委員長 朴基元氏 外交委員長 韓相龍氏 內事委員長 白寅基氏 運動委員長 鄭永斗氏 會計主任 崔敬淳氏 評議員 金基永氏 趙鎭泰氏 白完燮氏等 三十餘人이오 該會顧問은 總理大臣 李完用氏 農商工部大臣 宋秉畷氏 法部大臣 趙重應氏라더라

위의 기록을 보면 1907년 10월에 日本皇太子를 奉迎하기 위하여 漢城府民會를 조직하고 회장에는 張憲植을 선정하였으며, 임원들도 뽑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京城府史』(卷 2, p. 51)에는

日本皇太子殿下 訪韓의 報가 이르자 (中略) 民間에 있어서도 亦是殿下의 歡迎을 動機로 當時의 漢城府尹 張憲植 其他 兪吉濬 趙鎭泰 芮宗錫의 主唱에 의하여 새로 漢城府民會를 組織하여 府尹 張憲植이 會長이 되고

라고 하여 당시 한성부민회 주창자로서 장헌식, 유길준, 조진태, 예종석 등을 거론하고 있으나 당시의 보도에는 유길준, 예종석등의 이름은 없다. 그리고 이때는 유길준이 1907년 8월 16일 망명에서 돌아온지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민회 설립에는 관여하지 않았을 것 같다. 장헌식, 유길준, 조진태 예종석이 함께 참여한 것은 1908년 5월 7일의 한성부민회 발기회였다. 아마 이 사실과 혼동이 된 것 같다.

그리고 『大韓每日申報』 1909년 8월 24일자 잡보 「認可未決」에는

그 이래로 府民會는 국가의 儀式行事를 준비하는 단체로서 활동하였다.⁵⁾

곧 이와같은 府民會를 自治制度로 발족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이에 대해서는 『皇城新聞』 1908년 5월 10일자 잡보 「自治有望」이라는 제목하의 기사에

再昨日 下午 三時에 石鼓壇內에서 漢城府民會發起會를 開호고 初立任員을 選定호았는디 會長 兪吉濬 副會長 趙鎮泰 初立委員 鄭齊斗 趙允鏞 鄭永斗 芮宗錫 韓相龍 鄭丙朝 諸氏오 出席員은 三十餘人이라 法大 趙重應 漢尹 張憲植 日本居留民團長 熊谷頼太郎 諸氏가 議決호은 事項은 趣旨書를 漢城內에 公布호은 事오 顧問 六人을 監督官廳中으로 薦定호은 事오 發起人을 五江及京城附近洞中人으로 加選호은 事이라더라

고 있다. 이 내용에서 1908년 5월 8일에 自治制度로서의 漢城府民會 發起會가 열렸고 兪吉濬이 會長으로 선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때로부터 兪吉濬은 漢城府民會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하였던 것 같다. 이 發起會에 法部大臣, 漢城府尹 등이 참석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漢城市制를 自治制로 개편하고자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계획은 결국 統監府에 의해서 좌절되고 말았다. 『皇城新聞』 1908년 6월 7일자 잡보 「自治制遲延」에

漢城府民會는 昨年 日本皇太子渡韓時에 歡迎準備의 必要호을 因호야 府尹 朴義秉氏가 周施設立호은 것인데 라고 하여 1909년에 일본황태자가 방한하고 이때 한성부민회가 부윤 박의병에 의해서 설립되었다고 하고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일본황태자의 방한은 1907년 10월에 있었다. 그리고 당시 府尹은 張憲植이었다. 『舊韓國官報』 1907년 7월 25일자 3827號를 보면 朴義秉은 1907년 7월 22일에 漢城府尹을 그만두고 그 다음날부터 張憲植이 그 직을 맡았다는 것이다. 당시 府尹이 朴義秉이라고 한 것은 착각을 한 것 같다.

또 崔南善의 『故事通』(p. 246)에는

光武 11년에 兪吉濬이 漢城府民會를 설립하야 自治觀念을 鼓發호은 라 하고 있으나 유길준이 한성부민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발기회를 개편한 것은 1908년 11월이었다.

- 5) 예를 들어 1908년 8월에는 大皇帝陛下即位 第一回紀念慶祝禮式을 준비하였다. (『皇城新聞』 1908년 8월 5일 잡보 「慶祝準備開會」 참조).

內部에서 漢城府尹의 意見을 因하여 漢城自治制度를 實施하겠다고 統監府에 同意를 請하였더니 該內에서 尙今承認치 아니함으로 自治實施가 되지 못한다더라고 하여 앞서 發起한 自治制로서의 漢城府民會를 統監府가 승인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즉 統監府에 의해서 地方自治制度로서의 漢城府民會의 設립 계획도 일단 무산되고 말았다. 府民會는 다만 기존의 국가행사 준비기관으로서 존재할 뿐이었다.

그렇지만 漢城府民會 會長 兪吉濬은 自治制로서의 漢城府民會 設립을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었다. 『續陰晴史』 1908년 11월 7일자 金允植의 일기에

下午七時 赴惠泉湯 漢城府民楓菊會 會長矩堂 食堂罷 開會說明 漢城府民會正式會事 前此府會 即臨時慶祝會也 今始開正式會 選定發起推薦委員 趙旨書·規則·委員·訂以來土曜日 復開于鍾路商業會議所

라 하여 기존의 漢城府民會란 단지 臨時慶祝會에 지나지 않아서 兪吉濬이 漢城府民會를 正式會로 만들기 위한 일을 의논하기 위하여 1908년 10월 7일에 회의를 개최하였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兪吉濬이 自治制로서의 漢城府民會 設립안을 다시 거론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漢城府民會가 自治制로서는 이미 통감부로부터 인가를 받지 못한 바 있었기 때문에 兪吉濬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길을 모색하였다. 당시 발표된 「漢城府民會 立理由書」에

眞正한 自治는 法律에 出거나니 吾儕가 何據하여 立코져 하는가 曰 今日의 漢城府民會가 規約로 成立하는 理由가 此에 在호라 法令의 制定한 自治를 行치 못하는 故로 府民의 合同한 意思가 規約으로써 一團體를 組織하여 (中略) 雖曰 完全한 體裁를 備치 못하다거나 (中略) 法定한 團體로 化成하는 其日이 必有호리라⁶⁾

6) 「漢城府民會 立理由書」는 『全書』 IV pp. 314~315에 수록되어 있지만 『皇城新聞』 1908년 12월 12일자 잡보에도 게재되어 있다. 그런데 『全書』에 수록된 것에는 몇개의 오자가 보인다.

고 하여 法律로 제정된 自治制는 당장에 시행할 수 없는 형편이므로 비록 自治機能에는 한계를 지니고 있지만 우선 規約에 의거한 漢城府民會를 창립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차후에 法制化를 꾀해 보자는 계획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漢城府民會規約」에 附則으로

本規約은 漢城自治制의 法令頒布까지 其効力을 存하는 者로 함

이라고 명시하여 놓고 있는 것이다.⁷⁾

이렇게 規約에 의한 순수한 민간자치단체로서 漢城府民會를 설립하는 것도 순조롭게만 진행된 것은 아니었다. 『大韓每日申報』 1908년 12월 26일자 잡보 「民會의 三風雲」에

去二拾六日 石鼓壇內에서 漢城府民會를 開設하고 會長 俞吉준氏가 趣旨를 說明한 後 (中略) 投票紙를 點閱할 時에 壹塊投票紙가 有호대 該紙內에 氏名은 趙鎭泰 鄭永斗 芮宗錫 三氏인디 히三氏는 元來 壹進會員이라

는 기사내용을 통해서 漢城府民會 임원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일진회의 부정선거행위가 있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同紙 1909년 1월 5일자 잡보 「民會相持」에는

漢城府民會總會를 初次에는 本月拾日로 退定호았다가 再次에는 拾七日로 更退호았거니와 壹進會에서는 京鄕會員을 揮勳호야 拾日에 總會를 期於기設호고 會員以下任員을 組織호다며 壹般府民들은 來七日에 開會호다하니 府會의 決裂衝突을 難色호리라는 輿論이 有호더라

는 내용의 기사가 실려 있었으며, 그 다음날 기사 「對抗民會」에는

壹進會에서 漢城府民會와 對抗하기 爲호야 地方支會員을 多數招上호므로 各郡人民은 何等事項인지 不知호야 情況이 甚○○擾호다더라

는 내용이 게재된 점으로 보아 壹進會에서는 서울 뿐만 아니라 地方支會의

7) 『全書』Ⅳ p. 293.

회원까지 동원하여 일반한성부민과 대항하면서 자기들 뜻대로 한성부민회를 조직하여 장악하고자 획책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壹進會는 漢城府民會를 그들 뜻대로 장악하는에는 성공하지 못하였던 것 같다. 즉 일진회에 대항한 일반한성부민들이 주장한 대로 1909년 1월 17일에 漢城府民會 總會가 개최되었으며 여기서 회장에는 역시 兪吉濬이 부회장에는 尹孝定이 각각 선출된 것이다.⁸⁾ 그리고 1909년 3월 20일 漢城府民會 臨時總會에서는 「漢城府民會規約」을 통과시켰다.⁹⁾ 이렇게 하여規約에 의한 자치제로서의 漢城府民會가 면모를 갖추어 나갔다. 물론 兪吉濬이 처음부터 계획한대로 漢城府民會가 法令상의 公認을 받기 위하여 정부에 요청을 해놓았으나 한성부민회가 해산될 때까지 이 계획은 실천되지 못하였다.¹⁰⁾

또한 「漢城府民會 糊立理由書」를 보면

漢城府民會로 하여금 全國의 模範을 作하는 責任을 行케야야 四方에 風動하는 効力이 全國의 地方人民으로 하여금 都會及面社의 區域을 從하여 皆此規約을 奉行케 할이니

라고 하여 漢城府民會가 설립되는 것을 출발로 하여 전국적인 자치제도의 확립을 목표로 삼고 있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兪吉濬은 『大韓每日申報』 1909년 2월 1일자 잡보 「兪氏計劃」에

兪吉濬氏가 漢城府民會를 組織할 後에는 각 地方으로 周行하면서 人民을 勸勉하여 民會를 實施케 할 預定이라더라

8) 『大韓每日申報』 1909년 1월 19일자 잡보 「民會總況」.

9) 『皇城新聞』 1909년 3월 23일자 잡보 「府民會規約通過」에

漢城府民會에서 日昨總會를 開하고 該會規則을 通過하였다더라

하고 보도하고 있으며 이 총회는 3월 20일의 임시총회를 가리킨다고 본다. (『皇城新聞』 1909년 3월 20일자 광고) 『全書』에 실려있는 「漢城府民會規約」은 이 규약일 것으로 생각된다.

10) 『皇城新聞』 1909년 8월 24일자 잡보 「認可未決」 및 『每日申報』 1911년 9월 23일자 논설 「京城府民會解散」 참조.

고 밝혀져 있듯이 自治制度의 전국적인 확대를 위하여 구체적인 계획도 처음부터 세워놓고 있었던 것 같다. 그 첫 단계로써 지방에 보낼 5천부의 地方民會規約을 발간하고자 하였던 것 같다.¹¹⁾

이상에서와 같이 전국적인 규모 그리고 法律上의 自治制度 확립을 목표로 하여 그 첫 단계로 설립된 漢城府民會는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채 1911년 9월 24일 解散式을 갖게 되었다.¹²⁾ 즉 한일합방 이후에도 13개월 정도 존립하였다. 그러나 『每日申報』 1911년 5월 24일자 논설 「京城府의 諭告」에 보면

本年 四月 京畿道令으로 (中略) 茲에 始하여 管内 下級行政機關의 設立을 告하는 同時에 京城府民會 坊會는 自然 消滅함에 至호지라

고 하여 한일합방이후 지방행정체도의 개편과정에서 1911년 4월에는 이미 京城府民會는 자연히 소멸되었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漢城府民會는 한일합방 이후에도 얼마동안은 존속하였지만 그러나 활동이 별반 없었던 듯하다.¹³⁾ 그런데 이 때에는 창립이래 漢城府民會의 會長·副會長職을 맡았던 兪吉潛·尹孝定 대신에 趙重應·芮宗錫으로 대체되어 있었다.¹⁴⁾ 이렇게 볼 때 自治制로서의 漢城府民會의 설립 및 활동은 兪吉潛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졌다고 하여도 지나치지 않을 듯싶다.

Ⅲ. 漢城府民會의 설립 동기

1906년 이래로 統監府下에서 일련의 지방행정체도의 개편이 추진되는

- 11) 『皇城新聞』 1909년 4월 15일자 잡보 「會規發刊」, 간혹 漢城府民會를 모범으로 하여 지방에 自治制度가 조직되기도 한 것 같다. (『皇城新聞』 1909년 4월 4일자 잡보 「豐郡自治發展」 참조).
- 12) 『每日申報』 1911년 9월 23일자 논설 「京城府民會解散」, 이에 앞서 漢城이 京城으로 改稱되면서 아울러 漢城府民會도 京城府民會로 改稱된 바 있다. (『每日申報』 1911년 12월 10일자 광고 참조).
- 13) 당시 신문지상에 보도된 것이 별로 없다.
- 14) 『每日申報』 1911년 2월 7일자 잡보 「府民會의 告示」.

과정에서 지방자치제의 실시는 중요한 논점으로 부각되어 있었다. 따라서 지방자치제에 관한 글이 신문 잡지 등에 빈번히 소개되기도 하였으며, 日本의 자치제도를 소개하는 책이 발간되기도 하였다. 이런 속에서 1907년 3월에는 漢城市制準備會가 發起되고 日本의 市町村制를 모방한 자치제를 漢城에 시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상당히 고조되어 있었다.¹⁵⁾

그런데 당시 일본측의 속셈을 살펴보면 『日韓合邦秘史』에서

원래 韓民은 政治를 좋아하는 것이 食色이상이라면 이것을 政治 以外로 되게 시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며 일단 自治의 목표를 주는 것은 美名을 豫 期憧憬하여 自暴自棄기 빠뜨리게 할 수 있으며¹⁶⁾

라고 하였듯이 일본이 당시 우리에게 自治制를 목표로 활발하게 의견을 제시하게 한 것은 결코 한국에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이렇게 헛된 논의만 하도록 함으로써 지쳐서 자포자기에 빠지게 하겠다는 속셈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自治制로서의 漢城府民會 설립을 統監府에서 방해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兪吉濬이 自治制로서 漢城府民會를 설립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구보다도 地方自治制 실시에 대한 필요성을 절실하게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兪吉濬은 甲午改革 당시 內部大臣으로 있으면서 「鄉會條規」와 「鄉約辨務規程」의 두 법령을 통해서 지방자치제의 실시를 추진한 바 있었다.¹⁷⁾ 또 兪吉濬이 우리나라에 가장 이상적인 政體로 주장한 것은 立憲君主制였다. 그리고 立憲君主制 실시를 위해서는 반드시 지방자치제의 발달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¹⁸⁾ 말하자면 兪吉濬은 일찍부터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제가 발달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일

15) 李相燦, 「1906~1910년의 地方行政制度變化와 地方自治論議」, 『韓國學報』 42, 참조.

16) 黑龍會, 『日韓合邦秘史』上, 1966, p. 345.

17) 尹貞愛, 「韓末地方制度改革의 研究」, 『歷史學報』 105, 1985, p. 85.

18) 卒稿, 「兪吉濬의 立憲君主制論」, 『東亞研究』 13, 1988, pp. 65~66.

헌군주제가 확립되기를 추구하였다. 즉 兪吉潁이 漢城府民會를 설립한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런데 당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일본의 보호에서 벗어나는 것이었다. 유길준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도 지방자치제의 발달에서 찾고 있었던 것 같다. 유길준이 망명에서 풀려나 귀국하기 직전에 일본에서 자유민권운동가인 板垣退助에게서 求했다는 韓國의 政策을 보면

印度人이 俄國이나 其他國에 通하야 英國에 羈絆을 脫코자 혹은 其策이 아니라 國民은 文明에 導하야 富強의 道를 學호미 印度의 急務라 大抵 國民智識의 進歩와 國土富力의 增加가 獨立의 大原因이라 (中略) 歸國호신 後에 社會下層에 留意하야 改良進歩를 勉務호기를 望호노라¹⁹⁾

고 하여 他國에 기대어 獨立을 求하고자 하는 태도는 그릇된 것이며, 國民智識의 진보를 통해 文明으로 인도하고 국가의 富力을 증가시키는 것이 獨立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다. 특히 사회하층에 유념하여 그들의 개량진보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板垣의 의견에 대하여 유길준도 동감하고 있었을 것이다.

유길준이 망명에서 귀국한 후 일체의 관직을 사양하면서 내놓은 「光復策」이 있다.²⁰⁾ 이것은 유길준이 귀국한 뒤 그의 활동과 깊은 관계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 「光復策」을 보면

其保護之力이 將變而爲破滅之用也 | 오 輔成之心이 轉而爲廢奪之機也 | 리니 其可不惕然念勃然奮하야 舉國爲一而罔晝夜決死生進退爲富強之計哉잇가 固知彼之眞意 | 在於平和 故로 我亦以平和應之하야 外交焉委其代辦호고 內治焉聽其指導호니 後來我勢之長이 可伍文明之隣하야 以平和之眞意로 收其代辦호며 謝其指導 則彼亦當以平和應之라 故로 臣이 敢曰 誰我光復之道는 一由平和 | 오 而其成就之方은 實在富強이니 不自爲富強之策호고 只望光復之業者는 無異於坐俟百年之河清이라

고 하여 우리 스스로 富強을 도모하여 일본과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19) 『皇城新聞』 1907년 8월 13일자 잡보 「兩氏談話(日本大阪毎日新報譯贈)」.

20) 『皇城新聞』 1907년 10월 29일, 30일자 잡보 「兪氏의 光復策」.

것이 바로 일본의 보호에서 벗어나 광복을 되찾는 길이라는 것이다. 만약에 그렇게 되지 못한다면 지금은 우리의 독립을 보호한다는 일본이 돌변하여 오히려 우리나라를 파멸로 몰아갈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볼 때 유길준은 國民智識의 進歩 특히 사회하층민에 대한 계몽과 富強을 도모하여 일본과의 평화롭고 친밀한 유대관계를 증진시키는 것이 光復을 되찾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실천에 옮기고자 하였을 것이다.

「漢城府民會初立理由書」를

國本은 自治上에 樹立해야 其花가 文明되며 其實이 富強되고녀 (中略) 他國의 文明을 踏襲코져 하는가 速히 自治團體되기를 求홀지어다 他國의 富強에 比擬코져 하는가 急히 自治團體되기를 圖홀지어다.

라고 하여 漢城府民會를 자치단체로 창립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文明國이 되고 富強國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하고 있다. 즉 유길준이 漢城府民會를 창립한 것은 유길준 자신이 제시한 光復策의 실천이며 궁극적으로는 유길준이 가장 이상적인 政體라고 여긴 立憲君主制 구현을 위한 근본을 확립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Ⅳ. 漢城府民會의 조직 및 활동

1) 조직

「漢城府民會規約」 속에 「坊會規約」이 포함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漢城府民會에 坊會가 그 하부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皇城新聞』 1909년 1월 12일자 잡보 「西團의 完成」이라는 제목 하에

日昨 金重煥 劉秉秘 兩氏를 西部會에서 勸諭委員을 定호야 龍山西江兩坊에 派送호야 該坊內 人士에게 府民會의 目的과 部會의 必要와 坊會의 趣旨를 懇切히 勸諭하앗더니

라는 내용이 있어 府民會와 坊會 뿐만 아니라 部會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漢城府民會는 府民會一部會一坊會 3 단계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런데 「府民會規約」에는 部會에 관한 조항은 전혀 없고 또 당시 신문등에도 별반 관계기사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部會가 漢城의 행정구역인 東·西·南·北·中 5부에 각각 설치하였으며, 여기에는 會長 및 10人 정도의 議員을 두었다는 정도를 알 수 있을 뿐이다.²¹⁾ 따라서 府民會와 坊會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府民會회원의 자격을 보면 規約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여 놓고 있다.

- 一. 獨立生活를 維持하는 家族의 二十歲以上の 男子
- 二. 一年以上 府의 住居民되는 者
- 三. 國稅 一圓以上을 納하는 者

즉 府民會 會員은 1년 이상 漢城의 거주자 가운데 國稅 1圓 이상을 내고 있는 어느정도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20세 이상의 男子家長으로 제한시켜 놓고 있다.²²⁾ 즉 英國이나 日本의 自治制와 마찬가지로 府民會 會員에 일정한 자격제한을 두고 있으며, 이것은 兪吉濬이 아직 모든 사람에게 참정권을 부여하여야 한다는 데까지 民權意識이 발전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겠다.²³⁾

府民會의 조직을 보면 「規約」에는 會長·副會長·參理員 등으로 임원을 구성하고 대체로 千戶당 1인의 比率로 선출된 議員 44명을 두고 있다. 그런데 府民會가 창립된 직후인 1909년 1월 19일자 『皇城新聞』의 정보

21) 『皇城新聞』 1909년 1월 6일자 정보 「西部部會의 任員」.

22) 『舊韓國官報』 1909년 2월 3일자 4300號 附錄의 家屋稅法에 의하면 10間이 상의 가옥을 소유하여야 一圓以上の 稅가 賦課되고 있다.

金鳳烈은 모든 거주자 가운데 20세 이상의 남자면 모두 民會에 가담할 수 있다고 보고 논리를 전개하고 있으나 「規約」에는 분명하게 자격의 제한을 명시하고 있다. (『유길준의 開化思想』, 『慶熙史學』 11, 1983, pp. 106~7).

23) 卒稿, 「兪吉濬의 立憲君主制論」, pp. 59~63. 참조.

「府民會任員」의 기사에

會長은 俞吉濶氏로 副會長은 尹孝定氏로 推選되고 總務及財務監督은 寅之하고 常實員을 選舉하기로 決定하고 議員은 五部에 各十人式이라

고 하여 임원 이외에 5部에서 각각 10人씩 모두 50人의 議員을 두었다고 하고 있어 앞서의 「規約」내용과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먼저 府民會를 조직하고 그 뒤에 「規約」을 결정 통과시켰기 때문이며, 아마도 뒤에 「規約」에 의거하여 府民會의 조직을 개편하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坊會의 조직도 府民會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같다. 坊會에 관한 기록으로 신문지상에 처음 게재된 것은 『大韓每日申報』 1908년 8월 30일자 잡보 「觀嶺兩坊設會」라는 기사이다. 이 기사만 보아도 府民會가 자치기관으로 창립되기 이전에 坊會가 먼저 조직되기 시작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規約」이 통과된 1909년 3월 20일 경에는 거의 모든 坊會가 조직된 상태였다. 당시의 신문기사를 토대로 조직된 坊會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部會	坊會	所屬坊	會長	坊會의 部署	典據
中部	中三坊	瑞麟 澄清 壽進	白完燮	濟恤部, 土木部 教育部, 衛生部	○ 1908. 12. 29
	仁平坊	堅平 寬仁	尹雄烈		○ 1908. 12. 24
	長通坊		李根培		□ 1908. 11. 24
	貞慶坊	貞善 慶幸	金允植	教育部, 衛生部	□ 1908. 9. 16
	北三坊	通義 順化 俊秀	金鶴嶺		○ 1909. 1. 29

北部	觀鎮坊	觀光 鎮長	朴齊純 趙民熙 李民溥	人事部, 會計部 教育部, 衛生部	<input type="checkbox"/> 1908. 8. 30
	嘉安坊	安國 嘉會	李道宰	人事部, 教育部 警察部	<input type="checkbox"/> 1908. 9. 27
	德化坊	陽德 廣化	俞吉潛 俞星潛		○ 1908. 9. 27
	延禧坊				
南部	大明坊	大平 明禮			○ 1909. 3. 11
	蕪陶坊		鄭永斗		○ 1909. 3. 11
	廣通坊		李商在		○ 1909. 1. 8
	誠明坊				○ 1909. 3. 11
西部	西五坊	積善 仁達 餘慶 皇章 養生	張 博		○ 1909. 2. 23
	龍山坊		李址鎔		○ 1908. 12. 22
	西江坊		尹容植		<input type="checkbox"/> 1909. 3. 11
	松石坊	盤松 石雨	李宇榮		○ 1909. 1. 16
東部	昌建坊	昌善 建德	李圭植		<input type="checkbox"/> 1909. 2. 28
	蓮花坊				(○ 1909. 9. 3)
	崇仁坊	仁昌 崇信	李載克		(○ 1909. 10. 14)

* 典據는 『皇城新聞』(○)과 『大韓每日申報』(□)에 坊會의 組織에 관한 記事가 실린 날짜임 (()는 예외).

위의 坊會를 보면 하나의 坊으로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작은 坊은 몇 개의 坊을 연합하여 하나의 坊會로 조직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漢城의 坊이 20여개의 坊會로 조직되어 있었던 것 같다. 또 坊會의 조직에는 각기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것은 坊會가 각각 規則起草委員과 趣旨書制定委員을 선정하여 개별적으로 조직한데서 비롯된 것 같다.²⁴⁾ 물론 「坊會規約」과도 약간의 차이가 있다.²⁵⁾

그런데 『皇城新聞』 1909년 3월 24일자 잡보 「坊團劃定」에

漢城府民會委員會에서 漢城內 各坊曲劃定事에 對하여 提議하기를 千戶未滿者는 附近坊曲에 團合하여 一團을 組織하고 天然的 區域으로 成立된 坊曲은 五六石戶라도 一團을 組織하기로 決議하였다더라.

고 하여 府民會에서 坊會의 구역을 劃정하는 기준을 정하였다는 이 기사는 「府民會規約」이 통과된 직후에 나온 것이며 또 「規約」에도 같은 내용이 실려있으므로 「規約」을 정하고 여기에 의거하여 坊會의 조직을 재편성하고자 하였다고 볼 수 있겠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府民會나 坊會는 모두 일단 조직하고 난 뒤에 1909년 3월 20일에 통과된 「規約」에 의거하여 재편성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2) 활 동

漢城府民會는 1909년 3월 20일 임시총회에서 「規約」을 통과시키고 이 「規約」에 의거하여 조직을 재정비하고 본격적인 자치활동을 벌릴 계획을 세웠던 것 같다. 그러나 정부로부터 府民會는 상당한 압력을 받았다.

24) 『大韓每日申報』 1908년 11월 24일자 잡보 「民團又起」 및 『皇城新聞』 1908년 12월 29일자 잡보 「三坊織團」 참조.

25) 「漢城府民會議員選舉規則」의 附錄의 표에는 47坊이 26개의 坊會로 조직되어 있다. 이 중에는 예컨대 嘉安坊會와 德化坊會가 北四坊會 하나로 조직되어 있는 등 약간의 차이가 있다.

『皇城新聞』 1909년 4월 17일자 잡보 「民會規則押收」라는 제목하에

漢城府民會에서 民會規約를 編纂發刊하야 漢城內 各坊團에 送交하얏다함은 已
報어나와 更聞하즉 警視廳에서 此를 押收하얏다더라

고 하는 기사가 있다. 즉 府民會에서 통과시킨 「規約」를 편찬하여 각 坊
會에 보았으나 警視廳에 의해서 압수당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皇城新聞』 1909년 3월 24일자 잡보 「民會團取締」에

近來 各地方에 民會와 民團이라 稱호고 公共의 團體를 組織호고 賦課金을 徵
收하야 諸種의 弊害를 生케 호는 念慮가 有호故로 內部에서는 此를 取締호터인디
其會費로 任意出金호는 者는 勿論호고 賦課金과 如호은 一切禁止호을 方針이라더라

하여 民會에서 會費를 거두어 들이는 것을 금지시킬 방침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府民會 등의 재정을 압박하여 활동을 방해하고자 하는 의도였다고
할 수 있겠다.

또 『大韓每日申報』 1909년 4월 16일자 잡보 「民團操縱」이라는 제목
하에

近日 韓國內 各民團·坊會가 組織發起하야 自治制度를 實施호기 爲호인디 近
聞호則 統監府에서 族坊團을 臺致操縱하야 這道히 句管호을 次로 日昨에 團束令을
擬議制定하얏다더라

고 하여 民會를 단속할 法令을 통감부에서 제정할 계획이라는 것이었다.

이렇듯이 「府民會規約」이 통과된 직후부터 府民會등에 탄압을 가하기
위한 일련의 움직임이 통감부에 의해서 전개되고 있었던 것이다. 즉 府民
會가 그 면모를 갖추고 본격적인 자치활동에 들어가려고 하자 이것을 방
해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었다. 따라서 統監府의 감시 압박하에서
府民會의 활동은 극히 제한된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規約」내의 處務規程을 보면 府民會에 5課를 설치하고 民籍·救恤·學
校·衛生·土木 등 여러가지 사업을 각기 분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坊
會에서도 府民會의 지휘 명령하에 이러한 사업을 하도록 되어있다. 그러

나 당시의 형편상 규약대로 실행에 옮긴다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그러면 府民會에서 실제로 어떠한 활동을 하였던가를 당시 신문기사를 중심으로 府民會의 활동과 坊會의 활동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기로 하자.

1) 府民會

府民會에서는 咸境道 文川지역의 饑饉이나 또는 成川·順川 등 平安道지역의 水災를 救濟하기 위하여 모금운동을 벌리는 등 救恤사업을 폈다.²⁶⁾ 또 西間島牧民學校에 대한 원조사업을 추진하기도 하였다.²⁷⁾

그러나 府民會가 행한 사업을 진체적으로 풀어 볼 때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은 儀式행사였다. 예를 들어보면 皇帝即位紀念式慶祝, 乾元節慶祝, 大皇帝陛下幸行祗迎, 皇后陛下幸行祗迎 등과 같은 국내의 행사를 준비하였다. 뿐만아니라 日本과의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의식행사도 시행하고 있었다. 예컨대 日本人韓國觀光團 歡迎·送, 韓國人日本觀光團의 歡送·迎, 寺內統監赴任時 歡迎 등과 같이 친일적인 성격이 농후한 행사들도 府民會에서 적극적으로 주도하여 나갔다.

그런데 이러한 친일적인 행사에 대하여 불만을 갖고 府民會의 협조요청을 거부하는 坊會도 있었다. 즉 『大韓每日申報』 1909년 6월 7일자 잡보 「坊團反對」

漢城府民會장 兪吉준氏가 日本觀光團 渡來에 對하야 薰陶坊會에 通牒하고 壹齊歡迎하라 하얏더니 該坊團에서 反對하야 日本방에서 何名目으로 歡迎할 必要가 有하리오 日本에 渡去하얏던 觀光團員으로 하야금 歡迎하라 하얏다더라

고 하여 日本人 觀光團의 歡迎行事に 府民會가 坊會에 협조를 지시하자 薰陶坊會와 같은 곳에서는 반대를 표명하였다는 것이다.

유길준이 이러한 친일적인 행사를 떠나간 이유를 살펴보면 『大韓每日申報』 1909년 6월 5일자 잡보 「兪氏通牒」에

26) 『皇城新聞』 1909년 2월 27일자 광고 및 『大韓每日申報』 1909년 8월 25일자 잡보 「爲治患難」.

27) 『皇城新聞』 1909년 9월 25일자 잡보 「民會議決」.

漢城府民會長 俞吉濬氏가 學校局長에게 『通牒』로 日本紳士觀光團歡迎에 對하여 本學校에 通牒한 바는 壹則純潔한 生徒로 歡迎의 例에 參케 肅은 平和한 誠心을 表함이오 二則 活潑한 生徒로 盛壯한 聲勢를 發表함이오 三則 幼穉한 生徒로 友待上에 皮困함을 忘케 함이나

라고 하여 어린학생들로 하여금 관광단의 피곤을 잊게 하여 주고자 하는 목적도 있지만 그보다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일본과의 평화로운 관계를 진심으로 원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또 우리가 성장했다는 것을 日本人에게 과시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이것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俞吉濬 자신이 제시한 光復節을 실행에 옮긴 것이었다.²⁸⁾ 俞吉濬이 伊藤博文의 장례식에 직접 참석한 일 또 일본관광단 團長으로 일본에 건너간 일²⁹⁾ 등은 이러한 맥락속에서 이해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처럼 日本과의 친선관계를 강화하여 日本의 보호로부터 光復을 찾고자 하였던 俞吉濬은 앞서 그가 우려하였던 바대로 日本이 야욕을 드러내자 日本에 대한 태도가 바뀌었던 것 같다. 즉 『日韓合邦秘史』에

俞吉濬이 일전에 伊藤公의 葬儀에 참석하여 우리 朝野의 士에게 合邦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은 唱道하였지만 歸國後는 바로 豹變하여 다른 사람같았다.³⁰⁾

라고 하여 伊藤博文 장례식에 참석한 이후로 일본에 대한 俞吉濬의 태도가 크게 변하였다는 것이다. 즉 反日的인 태도를 취하였다는 것이다. 俞吉濬은 府民會 주최로 거행하기로 했던 伊藤博文을 위한 國民大追悼會를 취소시켰으며,³¹⁾ 韓日合邦을 제기한 一進會와 『國民新報』에 대하여 맹렬

28) 『大韓每日申報』 1909년 10월 31일자 잡보 「各代表出發」.

29) 『大韓每日申報』 1910년 4월 20일자 잡보 「團長說明」.

30) 『日韓合邦秘史』 下 p. 655.

31) 1909년 11월 23일자 『皇城新聞』 광고에 國民大追悼會를 무기한기시킨다는 광고가 보이고, 그 이후로는 여기에 관한 보도가 전혀 없다. 아마 그대로 무산된 듯 싶다(俞東濬, 『俞吉濬傳』, 1987, p. 293 참조).

『京城府史』(卷 2, p. 132)에서는 한성부민회장 代理 尹孝定이 알선하여 官民合同으로서 이등박문의 장례날에 추도회를 개최하였다고 하였으나, 이 추

히 성토하기도 하였다.³²⁾ 또 一進會 會員으로 坊會에 속해 있던 사람들을 축출하였다.³³⁾ 이와같이 日本의 합방야욕이 노골적으로 드러나자 兪吉濬도 기존의 親日인 태도를 버리고 反日인 경향으로 돌았으며 아울러 府民會의 활동도 反日인 노선을 밟았다.

ㄴ) 坊 會

坊會를 중심으로 벌리고자한 自治사업에도 상당한 제약이 가해지고 있었으니 坊會에서 주력하고자 한 사업 가운데에는 衛生事業이 있었다. 그러나 이 사업도 坊會의 계획대로 시행할 수 없었던 것 같다. 『皇城新聞』 1909년 3월 9일자 잡보 「民團請願留案」에

中部內 各民團에서 該部內 衛生事務는 漢城衛生會에서 施行하는 例와 同히 施行하것스니 認可하라고 內部에 聯名請願하얏는디 該部에서 姑爲留案하얏다더라

하여 坊會의 衛生事業 認司요청에 대해서 內部에서 고의로 유보시켜 방해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1909년 9월에서 10월 사이에 콜레라 전염병이 유행하게 되자 각 坊會에서는 防疫 등의 위생활동을 한때 벌리기도 하였다.³⁴⁾ 그러나 이러한 활동은 일시적인 재난에 대한 구제사업과 같은 것일 뿐이며 坊會가 추진하고 있었던 지속적인 자치사업으로 행해진 것은 아니었던 것 같다.³⁵⁾

도회는 총리대신 李完用 이하 각부대신들이 발기하여 아련된 것이며, 이때 尹孝定은 협조하는 정도였던 것 같다(『皇城新聞』 1909년 11월 3일 잡보 「追悼節次準備」 및 1909년 11월 2일자 잡보 「府民會指示」 참조).

金永上은 『京城府史』의 기록을 인용하면서 이때는 이미 兪吉濬이 물러나고 유명단체 비슷한 부민회라는 이름만으로 他國의 공신추도회를 베풀었다고 하고 있으나, 이 당시 유길준은 한성부민회 회장으로 있으면서 이등박문의 장례식에 참석차 일본으로 갔으며 그동안 副會長인 尹孝定이 대리직을 맡고 있었다. (『漢城府民會에 관한 考察』 p. 7, 『皇城新聞』 1909년 10월 31일자 잡보 「葬禮參用」).

32) 『大韓每日申報』 1909년 12월 15일자 잡보 「府會建白」.

33) 『皇城新聞』 1909년 12월 16일자 잡보 「除名逐名」.

34) 『大韓民報』 1909년 9월 26일자 잡보 「貞慶坊의 虎疫注意」, 10월 14일자 잡보 「長通坊의 衛生演說」.

이러한 정부의 규제 속에서도 坊會에서 무엇보다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간 사업은 敎育事業이었다. 「漢城府民會條例」에는 ‘私立學校에 關하는 規定’이라는 항목을 따로 설치하여 놓고 있는 점, 또 民智개발에 의한 文明國으로의 발전이 漢城府民會 설립이유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므로 敎育事業이 漢城府民會 사업의 중심을 이루었던 것 같다.

이 條例의 조항중에는

第四條 選舉區되는 各坊은 各一個 私立學校를 設立하는 國民義務가 有함.

第六條 私立學校의 經紀 及 維持하는 費用은 坊民의 負擔으로 함.

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각 坊會에서는 의무적으로 坊內에 각각 하나의 小學校를 설립하고 그 유지경비는 坊民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같은 의무교육실시안은 이에 앞서 兪吉潛이 표명한 바가 있었다. 즉 『皇城新聞』 1908년 6월 18일자 잡보 「兪氏談話」에

兪氏曰 現今 敎育을 發達하려면 爲先 漢城五署內에 學校區域을 定하고 其方面에 設立하는 私立學校는 區域內 居住人으로 其經總費를 自擔해야 永久의 財源을 作함이 可하다 하였더라

고 하여 兪吉潛은 漢城內에 학교구역을 정하고 그 곳에 설립하는 사립학교의 유지비용은 그 지역의 거주민이 부담하여야 교육은 발달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兪吉潛이 살고 있는 桂洞에서는 1908년 2월에 이미 桂山洞會를 조직하고 그 洞民들이 義務捐金에 의해서 桂山學校를 유지시켜 나가고 있었다.³⁵⁾ 이러한 사실로 보아 이러한 의무교육은 일찌기 兪吉潛이 구상하고 실천에 옮기고 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각 坊會에서는 이 條例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적어도 하나의 私立學校

35) 『大韓每日申報』 1910년 2월 6일자 논설 「仁平坊病院設立의 經營」이라는 제목하에 義務病院을 설립한다는 仁平坊會에 대하여 찬사를 보내는 글을 쓰고 있지만 이것 이외의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실현되지 못한 듯하다.

36) 『皇城新聞』 1909년 2월 11일자 잡보 「桂山洞會」.

를 운영하고 있었다. 즉 『皇城新聞』 1910년 8월 7일자 잡보 「收金員冒稱」의 제목하에

漢城內 各坊會에서 各其坊內에 學校를 或設立도 하며 或은 坊內에 在호 私立學校를 該坊內學校로 引繼호야 一般經費로 自擔호고 該會經費를 坊內居人等에게 收納호았는디

라는 보도내용을 통해서 당시 각 坊會에서는 坊內에 학교를 설립하기 시작하고 혹은 기존의 사립학교를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신문지상에서 찾을 수 있는 각 坊會에서 운영한 사립학교를 열거하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觀嶺坊會：觀嶺學校	廣通坊會：共成學校	薰陶坊會：長薰學校
中三坊會：三興學校	德化坊會：桂山學校	龍山坊會：普成學校
貞慶坊會：普光學校	北三坊會：淸風學校	仁平坊會：仁平學校
長通坊會：長通學校	崇仁坊會：興仁學校	

각각의 坊會에서는 小學校의 의무교육에 대하여 상당한 열의를 보이고 있었던 것 같다. 『皇城新聞』 1908년 11월 15일자 잡보 「私塾廢止決議」의 제목하에

北部 觀嶺坊會에서 (中略) 該坊內에 學生兒童이 多數호던 學父兄들이 學校에 入學케 아니호는 者가 或有호므로 此弊를 禁止호기 爲호야 該坊內에 私塾을 一切廢止하기로 決定호았더라

는 보도를 통해서 또는 『皇城新聞』 1910년 3월 23일자 잡보 「勸諭入學」의

德化坊長 俞星潛氏가 該坊內 人民에게 對호야 勸諭호기를 學生兒童이 有호고 入學케 아니호는 境遇이면 強制入學케 호것노라 호았더라

는 기사에서 엿볼 수 있듯이 모든 아동을 坊會에서 운영하는 小學校에 흡

수하여 의무교육을 실시하고자 추진하고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본격적인 의무교육실시는 坊會를 중심으로 한 교육사업에서 기대해볼 수도 있었을 것이다.

ㄷ) 재정

漢城府民會가 행한 국가적인 儀式行事 등의 경비는 정부의 지원을 받기도 하고 또는 은행, 사업체 및 각계의 유지들로부터 義捐金으로 충당되었다.³⁷⁾ 그러나 府民會가 순수한 민간자치단체이었으므로 「規約」에서도

定期規約金을 府의 一切 住居民의 協同排出하는 者로 함.

이라 하여 근본적으로 府民會의 경비로 漢城의 居民에게서 엄출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統監府의 압력, 또는 일부 주민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인하여 재정 확보에 어려움을 안고 있었다.³⁸⁾ 그래서 『皇城新聞』 1910년 3월 2일자 잡보 「府民會目的」이라는 제목하에 소개된 내용을 보면

家屋買賣는 境遇에 家賃는 勿爲相關케 하고 洞長의 紹介買賣는 價額百分의 一을 計減하야 半數는 手料金으로 支用하고 半數는 府民會의 經費에 補用코져 한다더라

고 하여 일종의 부동산 중계업을 府民會에서 흡수하여 그 중계수수료의 일부를 府民會의 경비로 충당하려는 계획도 세워보았으나 별반 도움이 되지 못하였던 것 같다. 『大韓每日申報』 1910년 7월 26일과 잡보 「府民會維持研究」에

漢城府民會에서는 經費의 窘細함을 因하야 廢會할 境遇에 至하엿는디

37) 『皇城新聞』 1908년 11월 21~12월 11일자 광고 「即位紀念式慶祝漢城府民會決算書」

38) 『皇城新聞』 1908년 12월 19일자 잡보 「號令餘存」, 『大韓每日申報』 1908년 12월 23일자 잡보 「逐蠻決議」 및 『大韓民報』 1909년 12월 15일자 잡보 「坊會一蠶」.

라 한 것으로 보아 府民會의 재정이 지극히 궁핍하여 廢會할 지경에 이를 정도로 재정압박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 같다.

각 坊會에서도 小學校 유지를 위한 재정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우선 각 坊會에서 坊內 학교유지를 위한 재원확보책을 보면

德化坊常議會를 開호고 事務를 處理호얏더니 草家三間以上에 每間 一錢式 瓦家三間以上에 每間 二錢式 收捧호며 其外에 有俸人及各社會의 當給이 有호人에 對호야 百分의 二를 收入호며 又 其外 特히 財産이 饑足호人에게 相當호 捐助를 請求하기로 決議호얏다

고 하여 德化坊會의 예로서 알 수 있듯이 대체로 각 坊會에서는 그 坊會의 會長·副會長 등 재력가들로부터 특별찬조금을 받아내기도 하였지만 기본적으로는 일정한 家屋金과 所得稅를 坊民에게 배정하여 의무적으로 내도록하여 경비를 확보하고자 하였다.³⁹⁾

그러나 이러한 義務金이 제대로 징수되지 않아서 坊會에서는 심한 재정적곤란을 겪었다.⁴⁰⁾ 그리하여 이 義務金을 보다 효과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貞慶坊會에서는 勸諭委員會를 선정하여 집집마다 방문하도록하여 義務金의 부담을 권유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였다.⁴¹⁾ 그러나 이러한 방법도 별반 효과를 보지 못하였다.⁴²⁾ 그래서 會長인 金允植이 직접 권유하러 나서기도 하였으나 결과는 거의 마찬가지였던 것 같다.⁴³⁾

당시 貞慶學校의 재정상태를 살펴보면 『每日申報』 1910년 8월 25일자 잡보 「貞慶學校와 金子」의 기사내용에

中部 貞慶坊會를 設立爾來로 經費의 出處가 無호야 子爵 金允植氏가 多數 補助를 擘안이라 各銀行會社에서 同氏의 名義로 借入支用케호 事도 有호얏더니 其債

39) 『大韓民報』 1910년 1월 11일자 잡보 「長通總會」 참조.

40) 『皇城新聞』 1909년 12월 2일자 「時事一擲」 참조.

41) 『皇城新聞』 1909년 9월 16일자 잡보 「貞慶坊決議」.

42) 권유위원과 주민 사이에 시비가 붙는 일도 발생하였다. (『皇城新聞』 1909년 3월 9일자 잡보 「不問可知前承旨」).

43) 『皇城新聞』 1910년 2월 6일자 잡보 「收金自擔」.

務를 起即濟帳치 못키야 各處의 督促이 甚호으로 金允植氏가 宮洞所有家屋一座를 坊會에 寄附키야 放賣報償케 하고 且 金貨三百圓을 支級키야 漢城銀行의 債務를 報償케 호 바

라고 하여 상당한 채무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채무는 결국 그 坊會의 會長등 재력가의 도움에 힘입어 해결할 수 밖에 도리가 없었던 것 같다. 이러한 재정압박으로 때로는 學校의 任員들이 無報酬로 근무할 것을 결의하였다는 경우도 보이며, 간혹 學校廢止問題까지 거론되기도 하였던 것 같다.⁴⁴⁾

V. 맺음 말

지금까지 舊韓末에 설립된 漢城府民會를 兪吉潛과 관련시켜 살펴보았다. 여기에서 얻은 것을 요약하여 맺음말에 대신하고자 한다.

府民會가 1907년 처음 조직될 때에는 국가의 儀式行事を 준비하는 단체와 같았다. 兪吉潛은 이것을 統監府 등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自治기관으로 설립하였다. 이 府民會는 그 하부조직으로 5개의 部會와 20여개의 坊會를 갖고 있었다.

兪吉潛은 이미 甲午改革 당시 鄉會를 통한 地方自治制를 추진하였으며, 또 우리나라에 가장 이상적인 政體는 立憲君主制라고 믿고 그 근본을 地方自治制에 두고 있었다. 그러므로 兪吉潛이 府民會를 自治기관으로 삼았던 것은 궁극적으로 立憲君主制의 구현에 그 목적을 두고 있었다.

兪吉潛은 日本亡命에서 귀국한 후에 우리나라가 日本의 보호에서 벗어나 光復을 찾는 길로 民智의 개발과 國家富強을 도모하고 日本과의 친밀한 유대관계를 강화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따라서 兪吉潛은 자신의 생각을 府民會를 통해서 실천에 옮겨보고자 하였다. 그래서 兪吉

44) 『皇城新聞』 1909년 8월 24일 잡보 「坊會意見」 및 1910년 3월 18일자 잡보 「以若三坊」 참조.

潛은 漢城府民會事業으로 日本觀光團의 환영회와 같은 친일적인 행사를 적극적으로 치루었으며, 坊會는 각각 坊內에 小學校를 설립하고 취학아동들을 모두 흡수하여 의무교육을 통한 民智개발을 도모하였다. 즉 兪吉潛이 漢城府民會를 창립한 것은 자신이 내놓은 光復節의 실천이었으며 궁극적으로는 立憲君主制의 구현을 위해서였다.

그러나 1911년 府民會가 해산될 때까지 처음부터 계획하였던 전국적인 규모의 자치체도로 발전시키지 못하였다. 따라서 統監府의 압력, 재정곤란 등으로 자치활동에는 상당한 제약과 어려움이 뒤따랐던 것이다.